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으로 한다.

제30조의2 중 “약속”을 “약속, 횡령, 배임,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불공정한 여신거래의 금지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조합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1항 중 “사업연도”를 “사업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은 때에는”으로, “1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할 또는 해산”을 “분할 또는 해산 및 손실금 보전”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임의적립금”을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空簿)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71조제1항 중 “대표이사 1명 및 검사·감독이사”를 “대표이사 1명, 검사·감독이사 1명 및 전무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를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로 한다.

제71조의2의 제목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을 “(임원의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를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1조의2제5항(중전의 제3항) 중 “검사·감독이사 및 조합”을 “검사·감독이사, 전무이사 및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중앙회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의2제5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71조의3제1항 중 “제71조의2제3항”을 “제71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을 “(회장의 대표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항”을 “제72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각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소관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및 그 대외활동

제72조제2항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사회 의결 사항 중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제72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대표이사가 제3항”을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제71조의2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② 검사·감독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2. 제7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제1호와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다음 각목의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
 - 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
 - 나.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
 - 다.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감독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

2. 제7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제1호와 관련되는 사업
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 단서 중 “제72조제2항”을 “제7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8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관에 따라 실시하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제76조의4 중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을 “검사·감독이사, 전무이사
또는 직원”으로 한다.

제78조제6항 중 “이익”을 “이익 또는 손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제80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의한 조합원 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정지 또는 견책”을 “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행정처분의 시효) ① 제8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8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효”라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내부감사, 검찰·경찰 등의 수사,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 중 “시달(示達)하거나”를 “통보하거나”로 한다.

제95조제4항 중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를 “제30조의2, 제39조제1항

제1호·제6호, 제39조의2, 제39조의3”으로, “제84조”를 “제83조의4, 제84조”로,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을 “제84조의2, 제85조(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다), 제85조의2, 제89조제3항, 제96조, 제99조(제30조의2 및 제42조 위반에 한한다.) 및 제101조(제39조의3, 제43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 제83조의4 및 제85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한한다.)의 규정을”로 한다.

제99조제2항제3호 중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2조제8항”을 “제71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101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이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임원의 선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장의 재임 중에는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5조,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이익만을 배분하는 실적배당상품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

전의 규정에 따라 이익만을 배분하는 상품은 개정 규정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앙회가 동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예치받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동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는 경우(동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78조제6항을 적용받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제5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4항제11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
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나. (생략)

다. 내국환

라. ~ 아. (생략)

2. ~ 7.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 아.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불공정한 여신거래의
금지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
정한 여신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
금, 적금 등 조합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
하는 행위

2.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여신
거래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 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

제4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입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생략)

제55조(합병과 분할) ① ~ ③ (생략)

<신설>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법정적립금) ① -----
사업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 20 -----

-----.

② ----- 분할 또는 해산 및 손
실금 보전-----

-----.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

----- 입
의적립금, 법정적립금-----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합병과 분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空簿)에 표시된 소멸
된 조합의 명의(名義)는 존속하
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분
다.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① -----

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 (생략)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생략)

③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 대표이사 1명, 검사·감독이사 1명 및 전무이사 -----

--.

② -----
----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등) ① --

-----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

-----.

②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 검사·감독이사, 전무이사 및 조합 -----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략)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

④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중앙회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감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 제71조의2제5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
-----.
----- 제72조의2제1항-----

-----.

②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생략)

③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각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소관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및 그 대외활동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③ -----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가 제71조의2제4항-----

-----.

<삭 제>

<삭 제>

<삭 제>

제72조의2(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

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
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
금계획의 수립

② 검사·감독이사는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
합에 대한 검사·감독

2. 제7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업 중 제1호와 관련
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
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다음 각목의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

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중앙
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

나.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

다.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감독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

2. 제7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업 중 제1호와 관련
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
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
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는 소
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
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회
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직원)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와

제73조(직원) -----
----- . ----- 제72조의2제1
항-----

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 ~ ④ (생략)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⑤ (생략)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정관에 따라 실시하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무이사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

- 검사·감독이사, 전무이사 또는 직원 -----

-----.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신 설>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신 설>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

----- 이익 또는 손실-----
----.

⑦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의한 조합원 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생략)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② ~ ④ (생략)

<신설>

-----.

1. -----
-- 정지
2. (현행과 같음)
3.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행정처분의 시효) ①

제8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8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효”라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내부감사, 검찰·경찰 등의 수사,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소송 이외

제8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
침 등을 시달(示達)하거나 자료
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
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
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
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
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

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
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
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
지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① -

----- 통보하거나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30조
의2,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39조의2, 제39조의3,-----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2.·3. (생략)

<신 설>

③ -----제71조의2제8항-----

<삭 제>

제9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제101조(과태료) ① -----

----- 2천만원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3. (현행과 같음)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생략)

<신설>

5.·6. (생략)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4. (현행과 같음)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6. (현행과 같음)

7.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 조합이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